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48호)

검 토 의 견 서

인권담당관 김 병 기 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 광 수 의원님 외 21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48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계인권선언선포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인권

사업 추진을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동 조례 제13조, 제13조의2는 서울시가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교류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13조의3을 신설하여
세계인권선언선포일을 전후하여 이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바,
현재 세계인권선언선포일(12.10.) 전후 시행하고 있는
‘인권문화행사’ 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동 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인권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안정적 인권사업 수행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0. 9. 3.

인권담당관 김 병 기